

Electrosuisse (SEV:스위스)

1. 개요

<p>▣ 정의</p>	<p>Schweizerischer Elektrotechnischer Verein (스위스 전기기술자협회)</p>
<p>▣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위스 전기안전규격, 강제규격 - 전기전자 제품의 검사기관으로 권위와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스위스를 대표해서 CEE에 가입하고 있다. - 저전압 전기제품에 관한 규격은 AC 1,000V, DC 1,500V이하의 전기제품을 대상으로 전기용품에 대한 강제인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 Electrosuisse의 안전시험은 강제규정으로 가정용 전기제품은 안전시험에 불합격되면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p>▣ 주관기관</p>	<p>- Electrosuisse (스위스 전기기술자협회 : www.sev.ch)</p>
<p>▣ 대상품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부품, 온도, 압력, 습도 등의 자동 제어 스위치, 감전방지용부품, 장애방지품, 전열기기, 장해전파를 발생하는 기기, 액체사용기기, 옥외용 기기, 전기의료용기기 등 - 교류 1000V, 직류 1500V이하의 전기제품 - Electrosuisse 승인을 받을 의무가 있는 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한 방사선에 관련된 기기 : 위험한 환경에서 사용되어지는 기기 : 전기의료기기 : 민간방호서비스에 사용되어지는 기기 및 기구
<p>▣ 적용규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 전압 전기제품에 관한 규정 (Verordnung uber elektrische Niederspannungserzeugnisse) - SEV (스위스국가규격)
<p>▣ 인증마크</p>	

■ 적용국가	- 스위스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는 특별한 양식이 없으며, 서신과 함께 제품사양서, 설명서, 회로도, 기타의 제품을 설명할 수 있는 소개책자나 카탈로그등을 첨부해야 한다. - 외국업체에 대한 신청자격은 제한되어 외국인이 직접 신청은 불가능하며, 스위스에 거주하는 대리인을 지정하여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다. - 인증시험은 원칙적으로 Electrosuisse시험소에서 실시 되어진다. 시험방식은 형식시험으로 1개의 샘플에 대해 실행되어진다.

2. 일반현황

스위스정부는 저 전압 전기제품에 관한 규정(Verordnung über elektrische Niederspannungserzeugnisse)을 1986년 제정하여 1988년부터 시행하였다. 이 규정은 강제 인증 제도를 채택한 종래의 전기법에 근거한 것으로 1949년에 개정된 중전기 규정(Stark Stromverordnung ;1933년 제정됨)과 교체 되어 종전대로 교류 1000V, 직류 1500V이하의 전기제품에 적용되고, 새로운 규정은 제삼자 또는 제조업자의 자기 인증제도를 기본으로 하여, 전기제품에 대한 인증제도가 시작되었다.

Electrosuisse는 비영리 민간기관이며 전기안전에 관한 스위스 국가 규격인 SEV 규격을 작성하기 위해 스위스 기술 위원회가 사무국을 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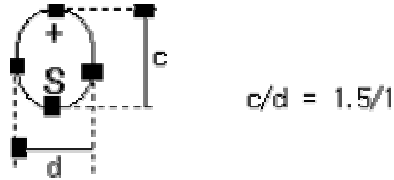
1903년에 용품 시험소 및 연방 검사부가 Electrosuisse내에 설치되었고, 1905년부터 전기 계측기의 교정업무를 시작하였다. 더욱이 1979년에는 연방정부의 의뢰에 따라 전자부품의 평가 및 시험에 관한 업무를 개시하였다.

3. 인증제도

Electrosuisse 인증제도에 관한 인증시험은 원칙적으로 Electrosuisse 시험소에서 실시 되어진다. 시험방식은 형식시험으로 1개의 샘플에 대해 실행되어진다.

시험은 신청자가 요구하는 규격에 근거하여 실시되어 지지만, 그 규격에 의문이 있을 경우,

적용규격은 관련업계와 협의한 후, 의견을 조정하여 담당관청의 인가를 얻어 결정한다. 인증서를 수령한 회사는, 시험 합격품과 동등한 제품을 시장에 출하 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시장에 출하한 모든 제품에는 다음의 안전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시장에 출하된 제품에 대해 원칙적으로 3년마다 감시시험이 실행된다. 검사관이 검사실시 일자를 정하고, 그것에 근거하여 Electrosuisse의 시험소가 판매점, 창고 등에서 샘플을 수거하여 검사한다. 또한, 전기제품에는 제조업자명 또는 스위스 국내 판매업자명의 표시가 의무적으로 부착되어야 하고, 이의 감시는 Electrosuisse가 담당한다.

이상과 같이 Electrosuisse 단독 인증제도 외에, Electrosuisse는 CENELEC 가맹국으로서 CENELEC 협정에 근거한 CCA 인증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IECCE 가맹국으로서, CB 제도에 근거한 인증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4. 신청절차

가. 신청의뢰

신청자는 회사의 공식 영문 편지양식을 사용하고, 어떤 제품 또는 부품을 어느 규격에 근거하여 인증을 취득하고 싶은지를 명확히 해서 송부 한다. 한편, Electrosuisse에 다음의 자료를 참고자료로 제공한다.

- 전기 정격
- 팜플렛(카다로그) 또는 취급설명서, 외관도, 사진
- 회로도(특히 전원부는 중요)
- 복잡한 기기의 경우는 시스템 전체의 블럭·다이어그램

나. 신청서

신청서는 소정의 양식을 사용한다.

신청서를 송부 할 때, 요구되어진 시험용 샘플과 기술 자료를 함께 보낼 필요가 있다.

샘플과 자료는 Electrosuisse의 지시에 따른다.

다. Electrosuisse에서의 시험

요구되어진 샘플과 자료가 전부 갖추어지고 시험의 순서가 오면 시험은 개시된다. 시험에 합격하면 인증서가 발행되지만, 불합격의 경우는 불합격한 부분에 대한 보완 작업을 계속하여 합격할 때까지 반복 시험을 하든지, 신청자 측에서 신청취하를 할 때까지, 신청상태는 유지된다.

라. 시험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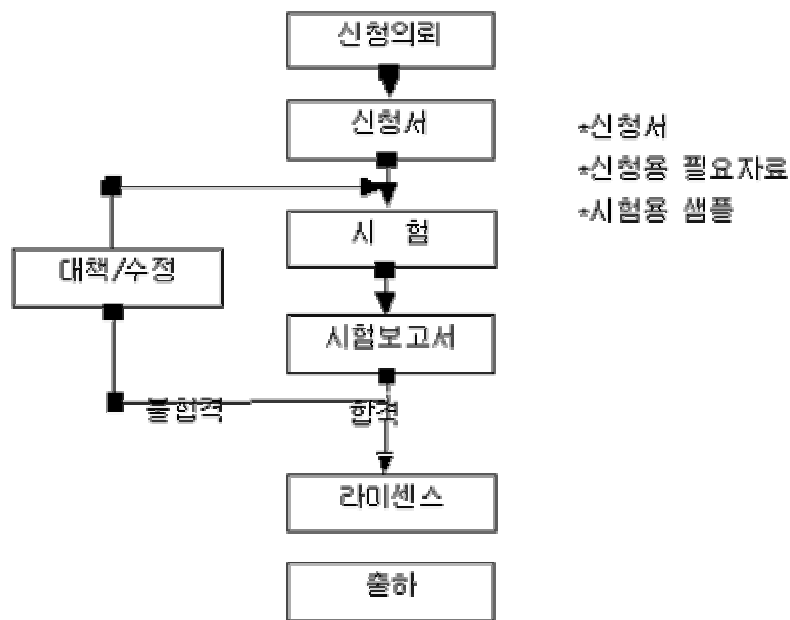
시험결과가 합격일 경우든 불합격일 경우든 시험보고서는 작성되어 신청자에게 송부 된다. 불합격일 경우는 불합격한 항목을 알 수 있도록 표시되어져 있다.

마. 인증 신청비

시험에 합격한 경우, 인증서와 동시에 청구서가 발행된다.

바. 출하

합격 시험보고서와 인증서를 수령하게 되면, 제품 또는 부품에 Electrosuisse 마크를 표시하여 출하 할 수 있다.



5. 공장검사 · 시장검사

공장검사는 실행되지 않지만, 시장조사는 시장조사 프로그램에 의해 실시된다.

6. 기타

Electrosuisse 승인을 받을 의무가 있는 기기는 다음과 같다.

- 위험한 방사선에 관련된 기기
- 위험한 환경에서 사용되어지는 기기
- 전기 의료기기
- 민간방호서비스에 사용되어지는 기기 및 기구

Electrosuisse 마크는 국제전기표준회의(IEC) 및 IECCE의 안전규격은 물론 그 외 다음의 분야에 대한 시험도 수행 하고 있다.

- 전자파 적합성 시험(EMC)
- 레이방사에 대한 방호
- X선에 대한 방호
- 가정용전기기구 및 유사 전기기기에 의해 발생하는 공급시스템에 대한 간섭